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6-109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타	㈜소리바다

2. 조치내용

□ **(과징금 부과)** 증권발행제한 3월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

○ ㈜소리바다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함에도 2021년 1분기보고서를 법정기한보다 15일 경과한 '21.6.1.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음

나. 근거법규
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0조, 제164조 제2항 제1호, 제429조 제3항 제2호, 동법 시행령 제175조 제1호